

『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는 '15. 4월 산업부의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,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본 공모사업의 수행기관으로서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내 「대경거점센터」를 운영하고 있음
- 이에 수행기관의 원활한 거점센터 운영을 위해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사용료 감면
 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 - 사용주체 : 한국생산기술연구원
 - 감면기간 : '17. 1. 1. ~ '19. 6. 30. (30개월)
 - 사용면적 : 724.5㎡(1층 535.5㎡, 2층 189㎡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시행령,
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
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-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 개요
 - 위 치 : 구미시 구미대로 350-27, 금오테크노밸리 내
 - 규 모 : 3,882.9㎡, 지상1층 ~ 4층
 - 건 립 비 : 35.7억원(도11, 시 24.7) ※ 준공일 : '16. 2. 29
 - 사업내용 : 3D프린팅 센터구축, 연구개발, 기업지원, 인력양성 등
 - 운영방법
 - 건물 운영 및 관리: 구미시(투자통상과) 직접운영
 - 3D프린팅 대경거점센터 운영: 한국생산기술연구원(수행기관)

위치도



5. 검토의견

○ 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

-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, 3D프린팅 대경권 거점센터 운영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센터 내 사용 공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, 3D프린팅 관련 장비와 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, 기술 확산을 통한 지역사업 다각화 등 기업지원 역할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